

[별지 제3호 서식](제7조 제1항, 제21조 제2항 관련)

## 철도건설기준 신·구조문대비표

관련기준	현 행	개정(안)	사 유
한국철도 표준규격 (KRS CM 0024-20 (R))역무자 동화설비 (통합역무 자동화시스 템)	3.4.18 AG의 구성 및 성능 (9) 자동개집표기의 외함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 아야 한다. 7) 플랩높이 : 450±50mm(지 면으로부터 플랩하단 기준)	3.4.18 AG의 구성 및 성능 (9) 자동개집표기의 외함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 아야 한다. 7) 플랩높이 : 550±50mm(지 면으로부터 플랩하단 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플랩 높이가 낮아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플랩에 걸려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음.</li> <li>-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서 개정(안)에 동의</li> <li>-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에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 안 전을 위해 80~100cm하고</li> <li>- 제조사에서도 플랩 높이 개정(안)에 동의</li> <li>- 한국철도공사에서도 플랩 높이 명분화 요구</li> </ul>